손해배상(기)

[전주지방법원 2009. 2. 11. 2006가합3577]



【전문】

- 【원 고】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전라북도지회 (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성 외 1인)
- 【피 고】 사회복지법인 한마음 외 4인 (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호)
- 【변론종결】2009. 1. 14.

【주문】

1

- 1. 원고에게,
- 가. 피고 2는 12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. 2. 24.부터 2009. 2. 11.까지는 연 5%, 2009. 2. 12.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나. 별지 목록 제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- (1) 피고 2는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1998. 2. 10. 접수 제1073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- (2) 피고 사회복지법인 한마음은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2004. 2. 24. 접수 제71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2. 원고의 피고 2, 사회복지법인 한마음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3, 4, 5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- 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2, 사회복지법인 한마음과 사이에 생긴 부분의 1/2은 원고가, 나머지 1/2은 피고 2, 사회복지법인 한마음이 각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3, 4, 5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.
- 4. 제1의 가.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【청구취지】주문 제1의 나.항과 같은 판결 및 원고에게, (1) 피고들은 각자 298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. 2. 24.부터 2007. 8. 27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(2) 피고 사회복지법인 한마음은 별지 목록 제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1998. 2. 20. 접수 제1411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.

[이유]

1. 기초사실

[이유]

】1. 기초사실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